

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한범 의원 등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12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12월 7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견청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(안 제2조~제3조)

○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(안 제3조~제5조)

○ 의견청취 및 회의록 작성 (안 제6조~제7조)

5. 검토의견

○ 위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견청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

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, 의견청취와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